999-36

「2018년도 경찰시험 대비」2017 경찰 2차 형소법 기출문제 해설(1)

안태영 교수 | 박문각남부경찰학원

1. 2017년 2차 경찰시험 출제범위

출제 영역		출제 내용	출제 문제수
제1편 서론	형사소송의 기초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적정절차원칙	1
제2편 수사	수사의 기본이론		
	수사의 단서, 임의수사	고소, 임의수사	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긴급체포, 체포구속적부심, 접견교통, 전자정보압수, 증거보전	5
	수사의 종결		
제3편 공판	공소제기		
	소송의 주체	제척기피/진술거부권	2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공판절차	증거개시/공소장변경/국민참여재판	3
	증거	피신조서/제315조/동의/자백보강	4
	재판		
제4편 상소..특별형사절차. 재판집행과 형사보상	상소		
	특별형사소송절차	재심/즉결심판/소년법	3
	재판집행과 형사보상		
종합			

2. 2017년 2차 경찰시험 출제경향분석 및 대책

(1) 출제방식

- 4지선다형 문제는 16문제, 박스형 문제는 4문제 출제되었다. 그 중 개수문제는 없고 OX형태가 2문제이다.

(2) 출제내용

㉠ 수사(7문제)와 공판(9문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83개 지문 중 법조문 24지문, 판례는 59지문으로 법조문:판례의 비율은 약 29%:71% 이다.

㉡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아주 쉬운편이다. 수강생 중에 만점이 아주 많다.

㉢ 대부분 기출문제를 출제했으며 최근판례도 보이지만 1차처럼 아주 최근(2017년)의 판례는 보이지 않는다.
(3) 수험대책
㉠ 출제경향은 자주 바뀐다. 우리 수험생은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한다.
㉡ 판례와 조문을 평소부터 차분하게 학습한다. 최근판례와 개정법령을 반드시 숙지하도록 한다.
㉢ 평소 모의고사에 반드시 참여하며, 기본강의와 문제풀이특강 그리고 마지막 핵심 찍기특강까지 계속 반복 과정을 통해서 실력을 점검하고 향상시킨다.

1.「형사소송법」의 이념인 적정절차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신체수색은「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청구인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② 음주운전과 관련한「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선거범죄와 관련하여 조사 시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한 경우,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다.
④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구(舊)「경범죄처벌법」제1조 제42호 조항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④
[해설]
① 헌재 2005.5.26, 2004헌마49
② 강제채혈(대판 2014.11.13., 2013도1228)
③ 위법수집증거(대판 2014.10.15., 2011도3509) 공직선거법상 조사 시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④ 경범죄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가 지문채취거부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록 피의자에게 지문채취를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수사의 편의성만을 위하여 영장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형해화한다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04.9.23., 2002헌가17).

2. 임의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 제1항 제1호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 조항의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간 행위는, 달리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③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④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① 대판2012.12.13, 2012도11162
② 대판 2006.7.6, 2005도6810
③ 불심검문은 반드시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구체적 범죄혐의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4.2.27., 2011도13999).
④ 공무소 조회(제199조 제2항)

3.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인의 접견교통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면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 ㉡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변호인의 구속피의자에 대한 접견이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 된다. ㉢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없다. ㉣ 교도관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류를 확인하고,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그 제목을 기재하여 등재한 행위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① ㉠(X) ㉡(O) ㉢(O) ㉣(X)
② ㉠(X) ㉡(O) ㉢(O) ㉣(O)
③ ㉠(O) ㉡(X) ㉢(O) ㉣(X)
④ ㉠(X) ㉡(O) ㉢(X) ㉣(O)

[정답] ②
[해설]
㉠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하였다고 의심받는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결 2007.1.31, 2006모656).

㉡ 대결 1991.3.28, 91모24
㉢ 대판 2013.3.28, 2010도3359
㉣ 법률에 의한 제한(헌재 2016. 4.28. 2015헌마243)

4. 고소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되,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하고, 직상수급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하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쉽사리 단정 할 것은 아니다. ㉡ 피해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으면 고소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 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②
[해설]
옳은지문은 ㉠㉢㉤이다.
㉠ 반의사불벌죄(대판 2015.11.12., 2013도8417)
㉡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대판2011. 6.24. 2011도4451)
㉢ 대판 2010.5.27, 2010도2680
㉣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대판 2001. 9. 4. 2001도3081).
㉤ 대판 2015.11.17, 2013도7987